

의안검토보고

의안번호	제 95 호		
의안명	서울특별시 서초구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		
발의자	서초구청장(기획예산과)	제출년월일	2019.03.20.
위원회	운영위원회	전문위원	최형순

I

제안내용

1. 제안이유

「지방자치법」 제130조에 따라 201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·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구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주요골자

【세입】

- 부동산교부세 증가분 및 구금고협력사업비

【세출】

- 구정 주요 추진사업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예산

3. 예산안

(단위: 천원)

회계별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
			증감액	증감률
합계	663,037,016	655,207,016	7,830,000	1.20%
일반회계	601,333,619	593,713,619	7,620,000	1.28%
특별회계	61,703,397	61,493,397	210,000	0.34%
의료급여기금	320,043	320,043	0	0.00%
건축안전	210,000	0	210,000	순증
주차장	61,173,354	61,173,354	0	0.00%

1.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개요

가. 제안경위

-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기침체, 고용감소 우려 등에 대한 대응을 위해 국가가 재정지출을 확장할 계획인 가운데 지방재정도 확장 운용할 필요성이 대두됨
- 세입재원 및 세출사업
 - 세입재원 : 부동산교부세(종부세인상)분, 구 금고협력사업비 등
 - 세출사업 : 일자리, 생활SOC, 지역경제사업 등 발굴

나. 총 규모

(단 위 : 천 원)

회 계 별	예 산 액	기 정 액	증감액	
			증감액	증감률
합 계	663,037,016	655,207,016	7,830,000	1.20%
일 반 회 계	601,333,619	593,713,619	7,620,000	1.28%
특 별 회 계	61,703,397	61,493,397	210,000	0.34%
의 료 급 여 기 금	320,043	320,043	0	0.00%
건 축 안 전	210,000	0	210,000	순증
주 차 장	61,173,354	61,173,354	0	0.00%

다. 세출 예산안

○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을 보면 총 76억 2,000만원이 증가했는데, 이 중 운영위원회 소관이 6,993만원이 증가,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이 123억 5,839만 1천원 증가하였으며, 재정건설위원회 소관은 48억 832만 1천원이 감소됨.

○ 특별회계는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1건 2억 1천만원이 증가됨

(단위 : 천원)

구분	추경예산안		기정예산		증(△)감	증(△)감률 (%)
	예산액	구성비 (%)	예산액	구성비 (%)		
합 계	663,037,016	100.00	655,207,016	100.00	7,830,000	1.20
일 반 회 계	601,333,619	100.00	593,713,619	100.00	7,620,000	1.28
의 회 사 무 국	4,695,409	0.78	4,625,479	0.78	69,930	1.51
감 사 담 당 관	230,031	0.04	230,031	0.04	0	0.00
홍 보 담 당 관	4,781,591	0.80	4,781,591	0.81	0	0.00
문 화 행 정 국	181,081,328	30.11	172,285,878	29.02	8,795,450	5.11
밝 은 미 래 국	122,080,822	20.30	118,593,381	19.97	3,487,441	2.94
주 민 생 활 국	183,157,728	30.46	183,082,228	30.84	75,500	0.04
기 획 재 정 국	8,685,171	1.44	17,729,637	2.99	△9,044,466	△51.01
도 시 관 리 국	26,751,079	4.45	23,840,269	4.02	2,910,810	12.21
안전건설교통국	39,863,421	6.63	38,538,086	6.49	1,325,335	3.44
보 건 소	30,007,039	4.99	30,007,039	5.05	0	0.00
특 별 회 계	61,703,397	100.00	61,493,397	100.00	210,000	0.34
의 료 급 여	320,043	0.52	320,043	0.52	0	0.00
건 축 안 전	210,000	0.34	0	0.00	210,000	순증
주 차 장	61,173,354	99.14	61,173,354	99.48	0	0.00

2. 운영위원회 소관

□ 일반회계

가. 세입예산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세출예산

○ 의회사무국 2019년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46억 2,547만 9천원에서 6,993만원이 증가된 46억 9,540만 9천원으로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되었음

○ 증가내역

(단위 : 천원)

예산과목			예산액	기정액	증감액	내용
정책	단위	세부사업·편성목				
전체 예산			4,695,409	4,625,479	69,930	
지방의회 운영지원	의회시설 장비유지 관리	시설장비유지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	23,000	3,000	20,000	- 의회 세미나실 설치 공사
		시설장비유지 관리 자산취득비	461,756	411,826	49,930	- 세미나실 가구 및 비품 구매 - 의원연구실 업무용 전산 장비 구매

- 의회사무국의 추경 사유는 첫 번째, 청사 내 3층 탕비실과 흡연실을 없애고, 공간 리모델링을 통하여 의원 연구 및 회의 진행 등 다목적 복합 공간의 세미나실을 구축하여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세미나실 설치공사 및 가구 및 비품구매 등 2,500만원 증액됨.

- 두 번째, 의원연구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내구연한이 경과한 노후한 PC 및 팩스 교체와 의원용 노트북 구매를 통하여 적극적이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의원 업무용 전산장비 구매 비용으로 4,493만원이 증액됨

□ 특별회계 : 해당사항 없음

3. 검토의견

- 지방자치법 제130조1) 및 지방재정법 제45조2)에 따라 본예산 편성 후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2호3)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,
- 2019년 제1회 의회사무국 추가경정예산안은 세미나실 구축 및 의원 연구실 전산장비 구매 비용으로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총 6,993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

1) 제130조(추가경정예산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. ② 제1항에 관하여는 제127조제3항과 제4항을 준용한다.

2) 제45조(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)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(追加更正豫算)을 편성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,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.

1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
2. 시·도의 경우 국가로부터, 시·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·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·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

3) 제39조(지방의회의 의결사항)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.

2. 예산의 심의·확정